

송광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정 2018. 3. 20.

개정 2019. 3. 21.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송광중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송광중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등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전학 등 보궐선출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패트롤맘회 등을 둔다.

제9조(총회)

-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장은 학부모회 예·결산 및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④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4. 학교자치회의 학부모회 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

제13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5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회장이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유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보조금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감사가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이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 2019학년도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가 신청서 ◆

학부모 성명		연락처	휴대폰☎
학생 인적 사항	()학년 ()반 ()번 이름 ()		

구분	활동 부서	내용
학부모회	대의원회, 학년별학부모회 학급별학부모회,기능별학부모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초 학부모회 규정에 따른 각종 활동
학부모 봉사	급식검수단	학교 급식 식재료 검수(08:10~08:30) 등
	패트롤 맘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학교 순회
학교경영을 위한 위원회 참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총회에서 위원 4명 선출
	교구 및 자료선정위원회	학부모 3명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학년별 대표 학부모 3명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학년별 대표 학부모 3명
	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	학년별 대표 학부모 3명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4명 위원회

참여가능하신 곳에 (○)표 해 주세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출마	
급식 검수단(학급당 4명)	
패트롤 맘(학급당 1명)	
교구 및 자료선정위원회 위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학년별 1명)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학년별 1명)	
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학년별 1명)	
학교급식소위원회	

※ 활동을 희망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회의 동의를 받아 담당교사 추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부모회 · 학부모 동아리 · 각종 위원회	1. 수집이용목적 :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동아리를 운영 안내, 각종 위원회 참여 안내 등 2. 수집항목 : 학부모 - 성명, 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 1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학부모 자치회 및 동아리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20px;"> 개인정보 수집 동의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요 </div>	
성명 : _____ (서명)	

2019. 3. 21.

송 광 중 학 교 장